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5 선고 2021가단211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5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,426,047원 및 그 중 32,355,714원에 대하여 2003. 11. 22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 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신동호

별지